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798

발의연월일: 2025. 3. 11.

발 의 자:이병진·김영환·김영호

한정애 • 이원택 • 민병덕

이상식 · 소병훈 · 오기형

허성무 • 박지원 • 권향엽

김 윤 · 임호선 · 장종태

문금주 • 오세희 • 양부남

이용우 · 임미애 · 김문수

남인순 · 김동아 · 이재관

강준현 의원(2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

이 현재 없음.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 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조정하는 「검찰청법」및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 이후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됨.

이에 국회에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국회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 국회가 고발하는 때에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및 제15조).

법률 제 호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선서"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선서"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자"를 "자,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고발하여야"를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검사는"을 "수사기관은"으로, "검찰총장"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정당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①	
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		
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u>선서</u>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	거짓으로 보고한 자, 선서	
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		
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감	②	
정인·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		
거나 검증을 방해한 <u>자</u> 에 대하	<u>자, 보고 또</u>	
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	
제15조(고발) ① 본회의 또는 위	제15조(고발) ①	
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		
2조ㆍ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		
한 때에는 <u>고발하여야</u> 한다. 다	수사기관의 장에게	
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	<u>고발하여야</u>	
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		

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 ② · ③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하며, 검찰총 장은 지체 없이 그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4
<u>수사기관은</u>
<u>수</u>
사기관의 장
<u>.</u>